

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수소용품의 합격표시(제38조 관련)

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(이하 "KC마크"라 한다)를 부착하거나 각인(刻印)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.

1. 연료전지

연료전지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KC마크를 부착한다.

	크기는 30mm×30mm로 하고 바탕색은 은백색, 문자색은 검은색으로 한다. 다만, 복수 인증제품으로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의4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.
---	---

2.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

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에는 KC마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"ㄱ"자의 각인을 한다.

ㄱ 크기: 6mm×10mm